

노사관계 동향

노사분규 동향

◆ 노사분규 전년동기 대비 대폭 감소

- 2005년 11월 20일 현재 노사분규 현황은 전년동기대비 크게 감소함(표 1 참조).
 - 분규발생건수는 268건, 분규참가자수는 115,917명, 근로손실일수는 786,597일로 각각 전년동기 수치인 450건, 183,081명, 1,138,469일보다 크게 감소

〈표 1〉 노사분규 주요지표 동향

(단위: 개소, 명, 일)

	2003. 11. 15	2004. 11. 15	2005. 11. 15
노사분규 발생 건 수(개소)	307	450	268
분 규 참 가 자 수(명)	131,725	183,081	115,917
근 로 손 실 일 수(일)	1,251	1,138,469	786,597

주: 당해년도의 누적치이며, 분규발생건수는 사업장 기준임.
자료: 노동부.

노동정책 동향

- ◆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

○ 2006년 1월 28일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입법 예고함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－ 공무원 노동조합에의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

- 법 제6조 제2항 제1호의 “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”은 “법령·조례 또는 그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규칙·훈령·사무분장 등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(직무대리자 포함) 또는 부서장을 보조하여 부서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수행을 지휘·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”으로 함.

- 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“인사·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”은 “공무원의 임용, 복무, 징계, 소청심사, 보수, 연금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, 노동조합 및 직장협의회에 관한 사항, 예산의 편성 및 집행(단순집행 제외), 행정기관의 조직·정원관리, 감사, 보안·청사시설 관리·질서유지에 관한 사항, 청사방호 및 비서·자동차운전업무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(자료정리 등 단순업무 보조자 제외)으로 함.

- 법 제6조 제2항 제3호의 “교정·수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”은 “「공무원임용령」 별표 1 중公安직군에 해당하는 공무원,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수사를 주된 업무로 행하는 공무원”으로 함.

- 법 제6조 제2항 제4호의 “업무의 주된 내용이 노동관계의 조정·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”은 업무의 성격상 노사간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“노동위원회의 사무국에서 심판사건 및 조정사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,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「근로기준법」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, 「선원법」 및 「근로기준법」 그 밖의 선원근로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조합 설립신고,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”으로 함.

－ 단체교섭의 범위와 관련 법 제8조 단서규정의 비교섭 대상

- “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, 공무원의 채용·승진·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, 기관의 조직·정원에 관한 사항, 예산

의 편성·집행에 관한 사항,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사항, 그 밖의 기관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”으로 구체적 예시, 교섭대상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함.

- 단체교섭요구서 제출기간
 -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(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)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교섭위원의 선정
 - 정부 교섭대표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공고하여 관련 노동조합이 교섭에 참여토록 하고, 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일 경우, 관련 노동조합의 합의로 노동조합의 조직규모 등을 고려하여 10인 이내의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임하도록 함.
- 정부 교섭대표는 법상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, 그 내용에 대한 이행결과를 다음 교섭시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.
- 노동쟁의 조정 또는 중재의 신청
 -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하도록 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내용이 법률에 규정한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도록 함.
- 공무원 노동관계 분쟁조정 전담 조정위원회의 구성
 - 공무원 노동관계 분쟁조정을 전담하는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근 6인과 상근 1인의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,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추천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.
- 노동조합이 지부 분회 등의 산하조직을 설치한 경우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.

노사단체 및 단위사업장 동향

◆ 한국노총 “전국노동자대회 개최”

- 11월 20일(일) 14:00~16:40 한국노총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“비정규 보호입법 쟁취·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”를 개최
- “비정규직 보호입법 쟁취”를 적은 대형 막대풍선을 올리는 상징의식과 무대 중앙에 “노동자의 힘으로 민주적 노사관계법 쟁취”를 적은 플래카드를 게시하고, 투쟁 결의문을 낭독한 후 자진해산하였음. 결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노사관계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시정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함.
 - 정규보호입법 쟁취, 특수고용직 노동3권 확보, 노조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, 일방적인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를 위하여 총파업을 불사하는 하반기 총력투쟁을 전개함.
 -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를 적극 조직화하고 권리보호투쟁을 전개함.
 - 정권과 자본의 전임자 축소방침에 적극 대처하는 한편,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전환하고 중소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하여 산업별 지역노조를 적극 조직함.
 -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인력감축과 구조조정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함.
 - 하반기 제도개선 투쟁의 승리를 위해 노동·민중단체와 연대하여 투쟁함.

◆ 민주노총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개최

- 2005년 11월 23일 민주노총은 “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 승리결의대회”를 여의도에서 개최함.
 - 정부와 경영계의 비정규노동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요구하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정과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에 대한 외면에 대한 비판
 -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은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직업의 불안정성으로 실업의 위기 속에 놓여 있음을 주장함.
 - 노동계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이루어진 금번 입법에 대하여 비관적인 전망과 함께 정부의 비정규법안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함.

◆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경총입장 발표

- 2005년 11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당정협의를 대하여 비판하는 입장을 발표함.

- 당정간 논의되고 있는 선진화 방안은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음.
 -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,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으로 전임자 급여지급은 경영계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임.
 - 전임자 급여지급 문제가 단체교섭시마다 노사간 분쟁과 파업을 야기하는 고질적인 병폐에 대하여 정부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장함.
- 선진화 방안은 표면적으로는 국제기준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국제관행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.
 - 노사간 힘의 균형에 입각해 근로자에게는 파업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항권으로서 사용자에게는 대체근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 관행임.
 - 따라서 노사균형의 원칙과 국제관행에 부합되도록 대체근로를 전사업장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함.
- 선진화 방안은 파업을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노사관행을 정립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사갈등과 분규를 조장하고 있음.
 -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‘최소업무 유지의무’를 제안하는 것은 필수공익사업에서의 파업으로 인하여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. 따라서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까지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안위에 대한 포기라고 볼 수 있음.

◆ 전국철도노조, “쟁의행위 결의 및 제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”

- 11월 3일(목) 노사는 제6차 본교섭에서 비핵심쟁점 3개 항은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인력충원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진전이 없자 노조위원장은 의견불일치 선언
- 11월 18일(금) 09:00~13:00 노조는 전국 122개 지부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70.6% 찬성으로 가결
- 11월 20일(일) 14:10~16:15 노조는 서울역 광장에서 “철도노동자 2차 총력 결의대회”를 개최하였음. 주요 발언내용은 다음과 같음.
 -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는 정부가 약속했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에 이유가 있음.
 - 공사 전환 이후 조합원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고용불안이 높다는 반증으로서 강력한 투쟁의지의 반영으로 보고 있음.
 - 철도노조 요구사항
 - 철도상업화 철회 및 철도 공공성 확보, 비정규직 외주화 철회, 해고자 67명 원

직복직, 주5일제 시행에 필요한 인력 2,250명 충원, 신규사원 인력충원 및 연금 불이익 해소

－ 투쟁선언 및 투쟁지침

- 철도노조 전조합원 쟁의복 착용(11. 21.) 및 122개 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 체계 완료하고 중식집회 및 주간농성 돌입(11. 22.)
- 각 지방본부는 11.26~11.28 전국 5개권역(서울·부산·대전·영주·순천) 대정부 규탄대회 전개

주요노동일지

(2005. 10. 15~11. 20)

년·월·일	노동정책	노사단체	기업 및 노동조합
2005. 10. 26	· 노동부: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방안 공청회 개최		
10. 31			· 현대하이스코: 공장내 쟁의행위 9일째
11. 1	· 노동부: 산재보험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(11. 1/11. 4)		
11. 2			· 한미은행지부: 경고성 총파업
11. 9	· 노동부: 공공부문 퇴직연금제 전국순회설명회 개최(11. 9~11.25)	· 민주노총: 비정규권리보장 국제 심포지엄(11.9~11.10) · 보건노조: 쟁의행위 찬반투표 기결	
11. 10			· 철도노조: 쟁의조정신청
11. 11		· 한국노총: 철도의 공공성 강화 및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	
11. 12		· 보건노조: 임원선거 종료(홍명욱 후보 당선)	
11. 14			· 조세연구원지부: 천막농성 돌입
11. 15			· 산업인력공단: 중재회부 신청 · 울산경비노조: 울산교육청과 임금·근로조건개선방안 합의 · 코오롱노조: 법원에 '이의신청가 처분' 신청
11. 16		· 화섬연맹: 임시대회 정족수 미달로 유회	
11. 17		· 한국노총: 창업박람회 개최	· 대한항공조종사노조: 쟁의조정 신청
11. 18	· 한국노동연구원: 공무원 노사관계발전방향 토론회 개최		· 철도노조: 파업 찬반투표결과 총 파업결의(11. 16~11. 18)
11. 20		· 한국노총: 전국노동자대회 개최	